

2014

연 차 보 고 서

이 연차보고서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의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 되었으며,

공직자윤리법 개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산등록 및 공개현황,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현황, 주식백지신탁제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및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목 차

2014 연차보고서

제 1 장 공직윤리제도 운영

1. 공직윤리제도 운영개요	1
가. 공직자윤리법 도입취지	1
나. 제도운영	1
2.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2
가. 구성	2
나. 기능	3
다. 운영방법	3
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현황	4

제 2 장 재산등록 및 공개

1. 재산등록	5
가. 재산등록의무자	5
나. 등록대상재산	7
다. 재산등록의 종류	9
라. 고지거부 제도	10
마.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12
2. 재산공개	13
가. 재산공개대상자	13
나. 재산공개 시기 및 내용	13

제 3 장 등록재산의 심사

1. 심사 개요	14
가. 심사권의 위임	14
나. 심사대상자 및 관할	14
다. 심사내용	15
라. 등록재산 심사결과 기준	16
2. 2013년 등록재산의 심사결과	20

제 4 장 기타 공직윤리제도 및 운영실태

1. 주식백지신탁제도	22
가. 개요	22
나. 직무관련성 심사	23
2. 선물신고	24
가. 신고대상자	24
나. 선물신고 및 이관·처분 절차	24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26
가. 취업제한 대상자	26
나. 취업제한 요건	26
다.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26

**제 1 장****공직윤리제도 운영****1. 공직윤리제도 운영개요****가. 공직자윤리법 도입취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주식백지신탁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제도운영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재산등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981년 12월 31일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총 38회에 걸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공직자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2.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가. 구성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교육감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추천을 받은 교육위원 2명을 위촉하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2명을 임명하되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교육위원회 위원 임기 내로 하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황]

(2014.10월말 기준)

구 분	성 명	인 적 사 항	위촉(임명)기간	비고
위촉위원	○○○	현, 경기도의회 의원	2014. 9. 17. ~ 재임기간까지	
	○○○	현, 경기도의회 의원	2014. 9. 17. ~ 재임기간까지	
	○○○	전, 경기도○○원장	2014. 3. 28. ~ 2016. 3. 27.	
	○○○	전, 경기도○○관장	2014. 3. 28. ~ 2016. 3. 27.	
	○○○	현, ○○대학교 교수	2014. 3. 28. ~ 2016. 3. 27.	
	○○○	현, 법무법인○○ 변호사	2014. 3. 28. ~ 2016. 3. 27.	
	○○○	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2014. 9. 1. ~ 2016. 8. 31.	
	○○○	현, ○○기구 부회장	2014. 9. 1. ~ 2016. 8. 31.	
	○○○	현, ○○로펌 변호사	2014. 9. 1. ~ 2016. 8. 31.	
임명위원	○○○	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2014. 1. 20. ~ 재직기간까지	
	○○○	현,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2014. 9. 1. ~ 재직기간까지	



나. 기능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 경기도교육감 소속 4급(상당)이하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와 심사결과의 처리
-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제출 요구 승인
-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업무 취급의 승인
- 그 밖에 조례나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다. 운영방법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주요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으로 의결한다.
- 위원은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위원 본인이 참고인이나 감정인으로 된 사항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이 경우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제외한다.

* 주요사항

-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증식 혐의자 조사의뢰 또는 그 승인
- 심사결과 처리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허위등록사실의 신문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 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또는 고발



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현황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3년 12월 말까지 총 51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3년도 중에는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3년도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

회 수	일 시	회 의 내 용	비고
제49회	2013.9.9.(월) 개최심의	☐ 의결사항 ○ 4급(상당)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심사 결과 처리 ○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개정 ☐ 보고사항 ○ 5급 이하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결과 보고 ○ 재산등록의무자 고지거부 허가 심사 결과 보고	
제50회	2013.11.18.(월) 서면심의	☐ 의결사항 ○ 임의취업자 취업제한 여부 심사 ☐ 보고사항 ○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실태조사 결과 보고	
제51회	2013.12.13.(금) 서면심의	☐ 의결사항 ○ 4급(상당)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심사 결과 처리 ☐ 보고사항 ○ 5급 이하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결과 보고 ○ 재산등록의무자 고지거부 허가 심사 결과 보고	



제 2 장

재산등록 및 공개

1. 재산등록

가. 재산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4급 이상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과 감사·건축·토목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1) 법에서 정한 등록의무자(법 제3조 발췌)

- ①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 ②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시행령에서 정한 등록의무자(영 제3조 발췌)

- ①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
- ②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 ③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기재산변동신고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2013.12.31.기준, 단위 : 명)

기 관 별	합 계	4급(상당)	5급이하	기 관 별	합 계	4급(상당)	5급이하
합 계	419	96	323				
경 기 도 교 육 청	115	25	85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5	1	4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25	10	14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5	1	4
교 육 전 문 위 원 실	1	1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4	1	2
경기도울곡교육연수원	1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23	2	21
경 기 도 과 학 교 육 원	5	5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5	1	4
경 기 도 학 생 교 육 원	1	1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4	1	4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1	1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4	1	4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1	1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20	2	19
경기도립중앙도서관	2	2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5	1	4
경기도립과천도서관	2	2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5	1	4
경기교육종합복지센터	1	1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5	1	4
경기평생교육학습관	3	3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5	1	4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3	3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5	1	4
경 기 도 교 육 연 수 원	5	5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19	2	16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20	2	21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1	2	18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22	2	21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5	1	4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17	2	19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4	1	2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17	2	14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5	1	4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5	1	4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4	1	3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17	2	16				

2013. 12. 31. 현재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의 정기변동신고등록 의무자는 총 419명 모두 비공개대상자로 그 중 4급이 96명이며 5급 이하가 323명으로, 4급은 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5급 이하 등록의무자는 77.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의 정기변동신고 등록의무자는 교육감(공개자) 1명, 3급(상당) 이상(비공개자) 25명으로 총 26명이다.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의 정기변동신고등록의무자를 기관별 또는 직급별로 분류하면 본청(교육전문위원실·북부청사 포함) 과장 이상 35명(8.4%), 5급 이하 99명(23.6%) 이며, 직속기관의 원장(관장) 4명(1.0%), 부장 23명(5.5%)이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16명(3.8%), 국장 18명(4.3%), 5급 이하 224명(53.4%)이다.



나. 등록대상재산

1) 재산등록대상 친족의 범위

재산등록대상은 본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이며,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단, 2009.2.3.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여성 등록의무자는 친부모의 재산을 신고해야하며, 법 개정 이전 혼인하고 재산등록을 해 온 여성 등록의무자는 경과규정에 따라 시부모의 재산을 계속 신고해야 함)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을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자료가 첨부된 고지거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등록대상재산의 종류 및 가액 산정방법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고지거부자 제외)의 부동산·동산 등 전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며,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된다.

※ 법 제4조, 영 제4조에서 정한 등록재산의 종류 및 가액 산정방법

구 분	종 류	가 액 산 정 방 법
부 동 산	소 유 권 건 물	○ (단독주택)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 최근에 분양받아 공시가격이 없는 아파트는 분양가액 － 지은 지 오래되어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가 가액 산정방법 적용 ○ (상가·빌딩·오피스텔 등) 대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 개별공시지가(대지)+시가표준액(건물) ○ (무허가건물) 취득가액 또는 사실상 거래가액



		토 지	○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 *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 수용 등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
	지상권·전세권		○ 계약금액(전세보증금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등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 종류·제작연도·제작회사·등록번호 등 명세 기재
동 산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예금·채권·채무		○ 해당 금액 - 수익증권, 저축은 평가액 - 적금, 보험금은 불입액(이자포함)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유가증권(주식·국채· 공채·회사채 등)		○ 액면가액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 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기준 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기준일 이전에 마감 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주식매수선택권		○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행사 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 기재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제품포함)		○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 종류·함량과 중량 기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 종류·크기·색상·작가 및 제작연대 등 명세 기재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취득가액 - 골프회원권은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소유자별 연간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 재산권		○ 연간 소득금액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연간 매출액
기 타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 출연재산



다. 재산등록의 종류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등록대상 재산을 모두 등록하는 최초 재산등록 외에 공직자로 재직하는 동안 정기적 또는 신분변동으로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는 신규 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재산등록과 정기, 의무면제자, 재등록의무자 및 퇴직자 재산변동신고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초 재산등록

임용·승진 등으로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단,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자는 1개월 이내)에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정기 재산변동신고

신고유예자 및 의무면제자를 제외한 등록의무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12월 중의 최초 등록의무자, 1~2월 중의 퇴직자 및 의무면제자,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등록의무자는 해당 재산신고로 갈음한다.

3)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등록의무자가 공직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신분이 변동된(전보 또는 전직) 경우에 신분변동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분이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최종신고(최초등록 또는 정기변동신고) 이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재산변동신고방법 등은 정기변동신고와 같다.



4) 재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퇴직·전보·강임 등으로 재산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3년(퇴직의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한 날 이후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5)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등록의무자로서 퇴직한 자가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최종 신고(최초등록 또는 정기변동신고) 이후 퇴직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재산변동신고방법 등은 정기변동신고와 같다.

다만,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산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퇴직자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2013년도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 현황]

구 분	최초 재산등록	정기 재산변동신고	의무면제자 (1차,2차) 재산변동신고	재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인 원	105명	419명	214명	16명	10명

라. 고지거부 제도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은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지거부 대상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 스스로의 생계유지 능력은 없더라도 등록의무자가 아닌 타인의 부양으로 별도의 독립생활을 하는 직계존비속



2) 고지거부 신청 종류

가) 고지거부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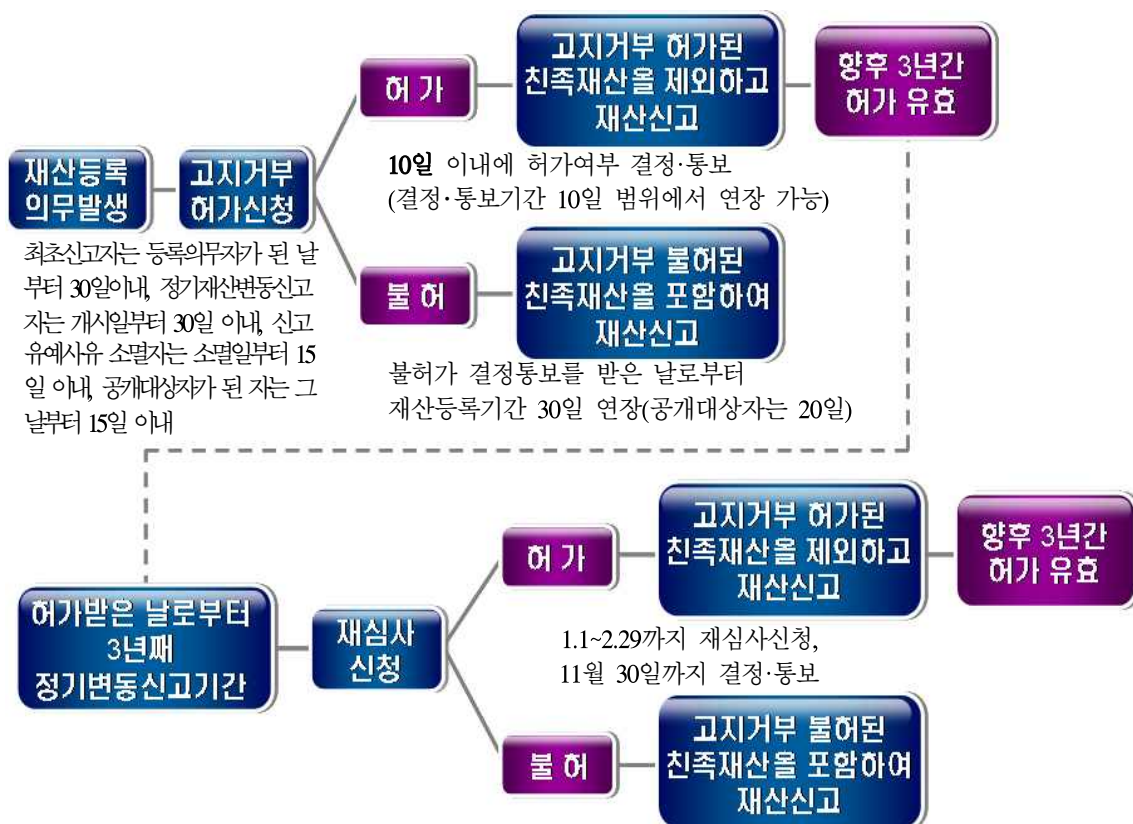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등록기간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해당 기간 : 최초 재산등록의무자 및 정기재산변동신고자는 등록기준일(등록의무자가 된 날, 정기재산변동신고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유예 종료자는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고지거부 재심사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으로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 신고기간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등록기간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지거부 허가 및 재심사 신청절차 흐름도】





[2013년도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등록의무자의 고지거부 허가 현황]

구 분	고지거부 신청 재산등록의무자	신청인원	허가인원	불허인원
합 계	112명	183명	177명	6명
고지거부 허가	99명	159명	155명	4명
고지거부 재심사	13명	24명	22명	2명

마.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재산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그 밖에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재산등록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 개인의 재산등록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는

- ①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사람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의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재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사람이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열람·복사의 허가권자는 본인 신청의 경우 등록기관의 장이며, 그 이외의 범죄수사, 비위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이다.



2. 재산공개

가. 재산공개대상자

「공직자윤리법」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을 공개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 법에서 정한 공개대상자(법 제10조제1항 발췌)

-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 제외) 및 전문대학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나. 재산공개 시기 및 내용

1) 공개시기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등록(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2) 공개내용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변동)사항을 공개한다.

[2013년도 재산공개대상자 재산 공개 현황]

공개주체	공개대상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비고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1명	2013. 3. 29.	관보 게재	

**제 3 장****등록재산의 심사****1. 심사 개요**

등록재산의 심사는 재산등록사항의 성실신고 여부와 공직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 및 타 법령 위반사항 등을 밝혀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축재를 방지해 공직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심사권의 위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1항에 의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를 그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38회 공직자윤리위원회(2008.2.13.)에서 5급 이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를 경기도교육감에게 위임하였다.

나. 심사대상자 및 관할

재산등록의무자 중 3급 이상 공직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이고, 4급(상당) 이하 공직자는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여 등록된 재산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치한다.

* 2007년부터 교육감, 교육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심사 관할이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로 변경



다. 심사내용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의 등록재산을 엄정히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경기도, 안전행정부, 중부지방국세청, 국토해양부, 금융기관)에 부동산 및 금융자료를 요청하여 회신자료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대조심사하고, 등록재산의 종류별 기재사항의 적정성·종전 신고 재산과의 증감 기재의 정확성 여부 등 재산등록제도 준수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이 구축됨에 따라 재산등록신고는 인터넷으로 이루어져 재산등록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고, 심사 관련 조회자료를 온라인으로 송·수신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 단축 및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1) 심사자료 조회

재산등록의무자와 재산등록친족의 명단을 작성하여 금융과 부동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조회요청을 하고 자료의 송수신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다.

- 토지 : 경기도
- 건물 : 안전행정부
- 회원권 : 중부지방국세청
- 자동차 : 국토해양부
- 금융거래정보(예금, 보험, 채무 등) : 약 2,800여개 금융기관

2) 대조심사

위에서 조회요청한 심사자료가 회신되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를 이용하여 일괄대조심사와 개별대조심사를 한다.

일괄대조심사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한 재산등록사항과 회신된 심사자료를 자동으로 대조처리하여 불일치되는 누락 및 허위 신고자료를 가려내는 심사이며, 개별대조심사는 일괄대조심사에서 불일치되는 사항을 개인별로 대조심사하여 동일자료로 보이는 누락·과다 사항은 상계처리하는 심사이다. 이때 신고누락 또는 허위 및 착오 등록사항과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소명여부를 판단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도록 소명을 요구한다.



3) 소명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소명서는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누락·과다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심사자료가 잘못 회신되어 부당한 소명도 있게 되므로 소명심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정상신고와 실무종결처리 대상자를 제외하고 불성실신고자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정한다.

라. 등록재산 심사결과 기준

제47회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재산심사 및 처분기준으로 개정하였다(2012.9.21.)

1) 실무종결

다음 신고 시 반영토록 안내

- 재산신고 순누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보완명령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고 보완신고 하도록 명령

- 재산신고 순누락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비조회성 재산의 잘못 신고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신고대상 재산이 없는 직계 존·비속을 누락한 경우
- “실무종결” 처리에 해당하나 정정의 실익이 있는 경우
- 기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경미한 사항”

- 재산항목은 신고하였으나 금액 단위, 면적, 주소, 지분 등 권리명세 오기
- 정보제공요청동의를 통해 받은 제공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 신고
- 재산등록방법을 착오하여 다른 항목이나 비고 등에 신고(기재)한 경우
- 재산등록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잘못 신고하였거나 법률상 신고대상이 아닌 재산을 잘못 신고



-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종 재산, 친목회비 등 재산의 잘못 신고
- 배우자의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잘못 신고한 경우
- 구거, 도로, 농지 창고 등 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거의 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동산의 잘못 신고
- 기타 위 사항과 유사한 경우

3) 경고 및 시정조치

심사결정서를 해당 등록의무자와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고 보완신고 하도록 조치

- 재산신고 순누락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비조회성 재산의 잘못 신고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4)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심사결정서를 해당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고 심사결정서와 징계의결요청서를 소속기관에 발송한다. 소속기관에서는 관련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퇴직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 등으로는 조치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천만 원 이하(2천만원 이내에서 관할 법원이 결정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재산신고 순누락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비조회성재산의 잘못 신고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 재산 신고시 재산의 가액,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에 대하여 소명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재산의 증감원인 등 소명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5) 관계기관에 타법 위반사항 통보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 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된 경우

제8조의2 (심사결과의 처리)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6) 징계의결요구

심사결정서를 해당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고 심사결정서와 징계의결요청서를 소속기관에 발송한다. 소속기관에서는 관련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재산 신고시 재산의 가액,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에 대하여 소명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재산의 증감원인 등 소명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7) 가중사항

- 전체 재산을 “변동 없음” 으로 신고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경고·시정조치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자료(답변)제출이나 소명 지체 등 심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 잘못 신고한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잘못 신고한 건수가 30건 이상인 경우
- * 건수 산정 : 건당 1천만원 미만은 모두 합산하여 1천만원당 1건으로 산정
(건당 1천만원 이상은 건당 1건)

〈 가중 제외 〉

-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보완명령’ 을 받은 경우

8) 감경사항

- 재산등록이후 처음으로 재산심사를 받은 경우

〈 감경 제외 〉

- 법 제22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경우

2. 2013년 등록재산의 심사결과

2013년도 등록재산의 대조심사 결과 60명의 불성실 신고자에게는 보완명령 이상의 조치를 하였다.

[2013년도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결과]

구 분	심사대상 인원		심 사 결 과			
			이상없음	실무종결	보완조치	경고 및 시정조치
제49회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4급(상당)	123명	98명	9명	13명	3명
	5급 이하	452명	409명	17명	22명	4명
제51회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4급(상당)	35명	24명	6명	5명	-
	5급 이하	87명	73명	1명	13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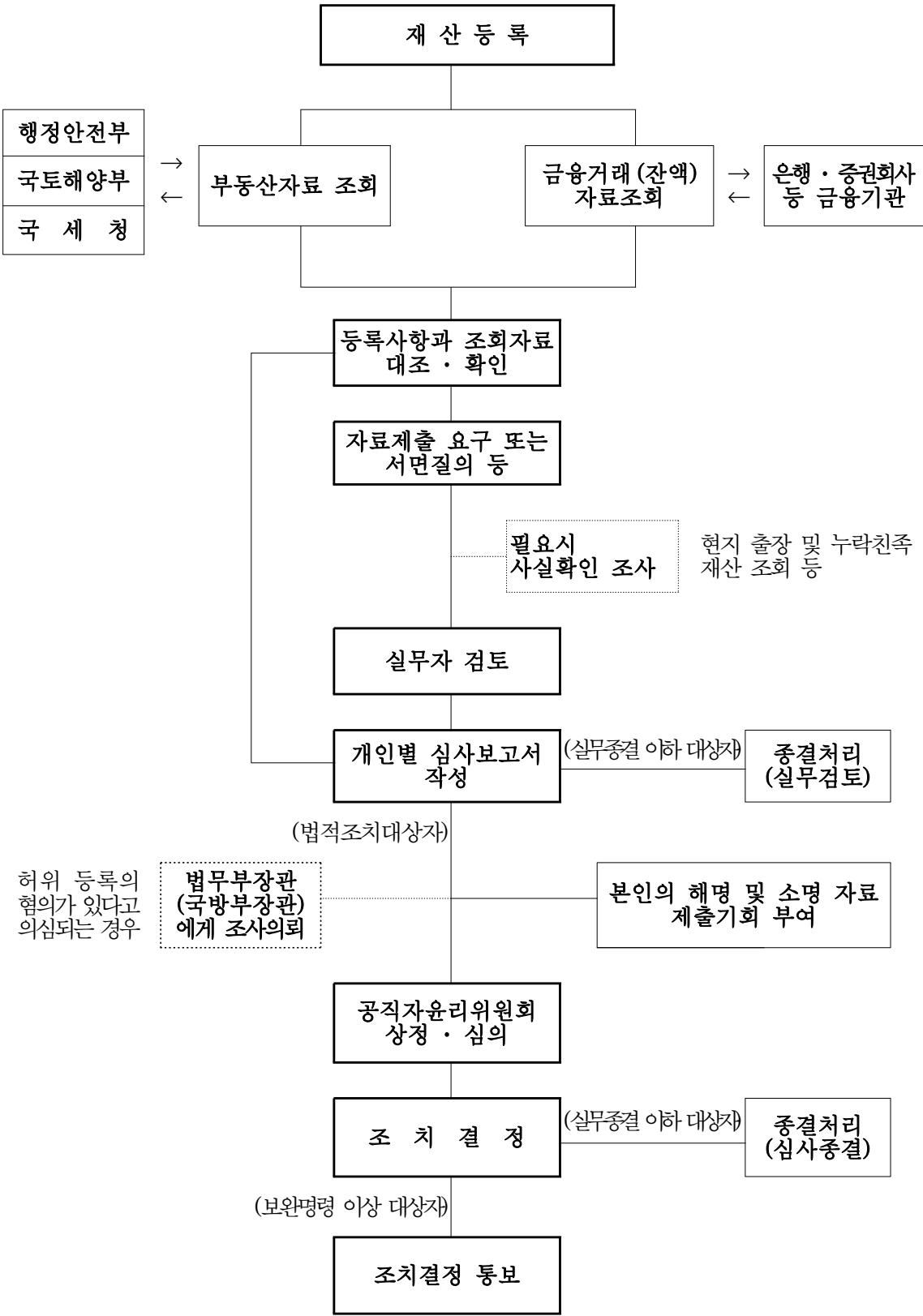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의 2013년도 심사대상 인원은 2012. 9. 1. 부터 2013. 9. 1. 까지 신분변동자와 2012. 12. 31. 기준의 2013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자를 포함하여 총 697명이다.

공개대상자 1명을 포함한 3급 이상의 등록의무자 26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 4급(상당) 이하 공직자 697명에 대하여는 제49회, 제51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4급(상당) 158명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경기도교육감에게 위임된 5급 이하 539명의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심사대상자의 등록재산사항 심사를 위해 재산등록사항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경기도, 안전행정부, 중부지방국세청, 국토해양부, 금융기관)에 부동산 및 금융내역을 조회한 결과 고의로 재산을 은폐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재산이 과대하게 증가·감소한 자에 대하여 재산등록서류와 소명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증감내역이 본인 및 배우자 등의 소유 부동산 매도 및 매입에 따른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이외 나머지 재산변동사항 신고의 재산 증가 내역은 대부분 급여저축 및 예금 보유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재산등록·공개·심사절차 흐름도】



제 4 장**기타 공직윤리제도 및 운영실태****1. 주식백지신탁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가. 개요**1) 백지신탁 대상자**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의 금융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다.

2) 백지신탁 대상주식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식백지신탁 대상이다.

3) 기준일

다음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 공개대상자등 백지신탁 대상자가 된 날
-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4)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백지신탁대상자는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받은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해야 한다.

나. 직무관련성 심사

백지신탁대상자가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때는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나,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직무관련성 있음’으로 결정·통지 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통지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2013년도 주식백지신탁제도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현황]

구 분	대 상	심 사 결 과			
		소계	관련있음	관련없음	각하,철회 등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교 육 감	해	당	없	음



2. 선물신고

공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신고대상자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단체)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등록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나. 선물신고 및 이관처분 절차

1) 선물목록 제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선물가액을 불문하고 지체 없이 등록기관 감사담당부서에 선물목록을 제출한다.

2) 선물평가단 가액평가

등록기관 선물평가단은 회의를 개최하여 목록 제출된 선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선물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선물을 신고토록 선물 받은 공직자에게 통보하고, 10만원 미만인 경우 선물 받은 공직자에게 반환하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한다.

3) 공직자의 선물신고

선물가액이 10만원 이상으로 해당 선물을 신고토록 통보받은 공직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한다.



4) 선물이관 · 처분

선물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 · 유지하되 문화적 · 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고, 타 기관에서 관리 ·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물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관한다.

또한,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 ·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음식류, 전자제품, 기타 소모성제품 등의 선물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매각처리 할 수 있다.

[2013년도 경기도교육청 선물평가단 신고선물 관리 현황]

구 분	신고 선물 관리 현황		
	계	등록기관 이관	자체관리
경기도교육청 선물평가단	해	당 없	음

2013년도 경기도교육청 선물평가단에 신고된 선물은 덕장중학교가 태국 T.U.N.S.학교와의 국제교류 방문 시 수령한 티셔츠 1건이었고, 선물평가단 회의 결과 가액이 10만원 미만(60,972원으로 평가)이어서 신고 대상 선물이 아니고, 문화적 ·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덕장중학교에 반환하였다.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에는 퇴직 전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 취업제한 대상자

취업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이다.

나. 취업제한 요건

취업제한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다.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지만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를, 업무관련성은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승인 신청서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및 취업승인 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확인요청 사항·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및 취업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및 취업승인 신청서를 이송한다.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비점을 보완한 최종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및 취업승인 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여부·취업승인여부를 심사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업무관련성의 범위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련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 포함)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2013년도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 현황]

퇴 직 자 현 황				취 업 자 현 황			취업제한업체 (협회)취업현황		
계	`11년도 퇴직자	`12년도 퇴직자	`13년도 퇴직자	계	취업 제한 업체 (협회)	일반 업체	취업 승인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	임의 취업
47명	18명	18명	11명	8명	1명	7명	-	-	1명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현황을 일제 조사한 결과, 퇴직자 47명 중 7명이 일반업체에 취업하였고 1명이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취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임의취업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어 취업적정으로 심사·결정하였으나, 사전에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취업하였으므로 관할 법원에 1천만원 미만(1천만원 미만에서 관할 법원이 결정함)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임을 통보하였다.